###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28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 강경숙·신장식·문정복

황운하 · 김준혁 · 김준형

서왕진 · 진선미 · 백승아

송재봉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서는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는 주요 수단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 인 「초·중등교육법」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삭제).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90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u>&lt;</u> 삭	제>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					
<u>한 사항</u>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동아 리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 다.
- ④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 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 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 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